

學校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李 正 熙
(京畿高等學校司書教師)

1. 概 觀

「참 어찌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政府는 차라리 圖書館法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어떨까? “公布”를 “空砲”로 만들지 않기 爲해서 말이다」 이 인용문은 現在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소장이며 本圖書館協會 전문이사이신 金斗弘先生께서 1964年度의 學校圖書館을 回顧하는 글의 서두에 나오는 말이다. 圖書館法이 바로 전해인 1963년에 公布되어 一年이 경과 했는데도 施行令이 안나왔다는 푸념이다.

이렇게 기다렸던 圖書館法의 施行令이 1965年 3月 26日字로 公布되었으나 學校圖書館에 關한 사항은 또 다시 “公布”는 “空砲”가 되고 말았다. 1971年 3月 14日 字 讀書新聞에 「있고도 없는 法의 盲點지대」란 제목으로 學校圖書館에 關한 施設基準令을 「蒸發해버린 施設基準」이라고 까지 공박하면서 圖書館法의 改正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까지 허술하다는 同法의 內容을 分析해보면 우선 施設基準에 關한 法條文은 同法 第25條 第2項에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라고 돼 있으며 또 同法의 施行令 第2條 第2項에 「法 第25條 第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 學校의 施設基準令에 依한다」로 또 다른 法으로 미루었다.

그래서 다시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第5條에 보면 「“圖書室”과 “필요한 圖書” 등의 教具를 두어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또 同 시설 설비 기준령 第7條에서는 「教具의 種목과 기준은 文教部令으로 定한다」라고 規定하여 놓고 이에 關한 文教部令이 없다는 것이다. 結局 學校圖書館 施設에 關한 法은 條文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健在하면서 그 內容인 알맹이는 어디론가 蒸氣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최근에 中學校 平準化 作業에서 學校圖書館에 關한 施設基準이 나오기는 했으나 역시 形式에 그치고 알맹이는 어디론가 회피하려는 느낌이 역력하다.

圖書館의 三大要素로서 施設과 책, 그리고 그 施設과 책을 整理 保存하면서 讀者에게 最大의 便利와 奉仕活動을 도모하면서 讀書指導까지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事實이며 或은 學者에 따라서는 「예산」을 포함시켜 四大要素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法은 있어도 이 네가지 要素를 다 읽고 있는 곳이 學校圖書館이다. 그래서 學校圖書館형편에서는 「있고도 없는 法의 盲點지대」란 말이 나올 만도 하다.

施設뿐만이 아니다 「사람」도 問題다. 同法 第6條 第1項을 보면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圖書館 資料 및 運營에 關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다음에 同法 第26條 職員 項目에서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各各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으며 또 同法 施行令 第6條 第1項에 「法 第6條 第1項 및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各級 學校에는 다음 各號에 依하여 司書職員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① 國民學校에는 1人以上의 司書教師나 1人以上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②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人以下인 때에는 1人的 司書教師나 1人的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人을 초과할 때에는 2人的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로 規定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어떠한가?

韓國圖書館協會에서 1973年度에 發行한 韓國圖書館統計에 依하면 各級 學校의 學生數에 依한 司書教師 배치는 고사하고 國民學校는 全國 學校數 6,197(842個 校個分校미포함)에 司書教師數는 겨우 381名으로 6.1%이며 中學校는 全國 學校數 1,866個校(31個分校 미포함)에 司書教師數는 454名으로 24.3%이며 高等學校는 全國 學校數 942個校에 司書教師數는 548名으로 58.1%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그것도 全員이 司書教

師가 아니고 司書의 職務를 擔當하고 있는 사람 까지 포함한 숫자인 것은 勿論이다(별표 1참조). 特히 公立 中高等學校인 경우 全國의 司書教師의 文教部 T/O마저 各道別 各級學校別로 알아 보기 힘들 정도로 소의 당하고 있으며 T/O가 있어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직에

있는 司書教師마저도 그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離職 현상이 허다하며 또한 學校長의 關心度에 따라서 司書教師의 本분인 圖書館奉仕와 讀書指導는 의면당하고 다른 雜務만 맡고 있는가 하면 심한데는 圖書館은 外部에서 오는 손님에게나 감독관청에 보여주기 爲한 장식품 아닌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學校長은 없기를 바랄

※ 별표 1 사 서 교 사

시도별 학교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전국중 학교수	%
국민학교	21	51	38	11	7	—	79	86	15	50	3	381	6,197	6.1
중학교	81	66	40	13	5	19	117	61	25	16	11	454	1,866	24.3
고등학교	101	45	92	26	21	32	101	51	25	46	7	548	942	58.1
합계	204	162	170	50	33	51	297	198	65	112	21	1,363	9,005	15.1

정도가 아닌가

다음에 또 問題되는 것은 「예산」이다. 1971年 5月 16日 字 讀書新聞에 「예산 없이 허울만 健在하는 學校圖書館」이라는 題目으로 자세한 실정을 말했다. 1973年度 韓國圖書館協會가 發行한 韓國圖書館統計의 1973年度 예산총액에 依하면 國民學校 全國 총학생수 2,512,581名에 총예산은 78,191,797원으로 學生 1人當 41원이며 中學校 全國 총학생수 747,759名에 총예산은 193,735,611원으로 學生 1人當 259원이며 高等學校 全國 총학생수 941,194名에 총예산은 344,519,069원으로 學生 1

人當 365원이며 初·中·高等學校 全國 총학생수 4,201,534名에 全國 총예산은 616,445,867원으로 學生 1人當 예산은 146원에 불과하다(同 통계표 p.12 학교도서관집계표의 初·中·高等學校의 學生數와 p.15의 학교도서관현황의 學生數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p.12 학교도서관집계표의 學生數를 參考하였다). (별표 2, 3, 참조)

이 예산 內容에 있어서도 各道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道에서는 學生 부담으로 或은 學生 自律的 經費에서 더부살이 하는 等 구구하다. (별표 3참조)

※ 별표 2 학 생 수

시도별 학교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국민학교	145,606	288,406	247,131	94,149	97,408	289,786	124,731	417,845	524,292	253,025	20,202	2,512,581
중학교	166,832	108,124	50,983	21,659	24,291	76,988	44,531	36,144	132,390	77,213	8,604	747,759
고등학교	228,651	66,643	126,718	39,037	46,018	51,552	45,442	104,148	143,921	82,141	6,923	941,194
합계	541,089	463,173	424,832	154,845	167,717	418,326	214,704	558,137	800,603	412,379	45,729	4,201,534

※ 별표 3 1973년 도 예산액

시도별 학교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국민학교	6,013,132	22,268,883	3,212,045	4,045,560	4,480,060	7,208,600
중학교	26,317,480	39,554,019	32,906,700	3,756,800	9,991,000	18,654,900
고등학교	57,211,790	30,147,560	97,419,780	8,890,500	648,600	23,952,000
합계	89,542,462	91,970,462	133,538,525	16,692,860	15,119,660	49,815,500

시도별 학교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국민학교	4,729,445	14,576,070	2,754,226	2,107,876	795,900	78,191,797
중학교	9,093,625	11,407,000	25,513,314	4,654,763	1,885,460	193,735,061
고등학교	12,686,150	54,625,693	40,477,519	17,102,817	1,356,600	344,519,009
합계	26,509,220	80,608,763	68,745,059	39,865,456	4,037,960	616,445,867

2. 中·高等學校 平準化와 學校圖書館의 問題

中·高學校 平準化를 筆者는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생각해 본다.

첫째로 施設의 平準化와 둘째로 學生들을 指導하는 教師 平準化와 셋째로는 첫째問題와 둘째問題를 包含 地域的인 平準化와 마지막으로 피교육자인 學生들의 教育정도에 따른 實力 即 知的이고 教養的인 能力的

平準化다. 첫번째 問題와 둘째번 問題는 算數의인 면에서는 어느정도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세번째 問題인 地域의인 平準化가 정말 可能할 것인지 問題다. 特別히 敎育者의 實力을 平準化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可能하다를 論하기 前에 施設과 指導하는 敎師가 平準化된다고해서 素養과 能力을 無視하고 平準化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自體가 우습지 않는가 말이다. 실형 그럴 可能性이 굳이 있다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能力이 있어 더 發展할 수 있는 學生의 實力마저도 붙들어 매둔다는 식의 개념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현금 진행되고 있는 平準化의 概念이 學生, 學父兄, 敎育行政擔當者, 敎師 할 것 없이 學生의 實力 平準化를 意味하고 있지 않는가 싶다. 아무튼 이 平準化過程에서 學校施設의 敎具가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중 學校圖書館과 책을 어떻게 平準化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매우 중요한 과제中的 하나라고 말하면 筆者더러 무책임하다고 공박 할런지 모르겠다.

概觀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施設은 各級 學校別로 欸배만상이다. 特別히 高等學校의 平準化는 上向式 平準化라는 美文을 使用하고 있는데 그 上向式의 標準을 어디다 둘 것인지 두고 불만한 숙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各道別 各級 學校別 차이가 심한 것은 概觀에서도 말했지만 이것도 平準化해야 할 것은 勿論이다, 現在 學生 自律的經費에서 應당하는 圖書費를 따로 獨立項目을 설정할 時期가 왔다고 생각된다. 概觀에서 言及한 學生 1人當 圖書購入費가 全部 學生 自律的經費에서 應당했다면 結局 學生이 부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自律的經費는 圖書費로 應당하는 金額정도는 없어도 學生 自治活動을 할 수 있다는 理論이 成立된다.

만약 自律的經費에서 그 金額이 圖書費로 應당되므로 因하여 學生 自治活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平準化과정에서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司書敎師도 概觀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中學校의 경우 全國의 24.3%밖에 배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平準化作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高等學校도 全國의으로 58.1%로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全員 보충할 것인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圖書館法대로 배치한다면 現在 1個 學校의 學生數가 거의 2,000名이 넘고 있으니 2名씩 배치해야 한다면 그 숫자를 명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히 짐작할 수 있다(별표 1, 2, 참조).

3. 結 言

1) 施 設

學校施設의 基本이 된 建物은 勿論 시청각자료(기체中心), 과학실험기구 등은 基準令에 숫자까지 명시하면서 실험을 할때에 絕對的으로 必要한 책은 敎具에

無視당하고 있다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다. 아마 우리나라 先生님들은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어 책이 없어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해석이라면 別問題다. 만약 그렇지 않고 科學的인 실험이나 知識, 敎養 등을 爲해서는 책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 學校에는 시청각기재나 실험기구보다 책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설기준령에 圖書館과 책에 對한 基準이 명백해져야 겠으며 그것도 先進國의 水準을 모방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도 現在 全國 各及 學校에서 갖추고 있는 水準의 上中의 것이 되어야만 명실공히 學校圖書館의 시설기준령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시설의 平準化도 이루어 진다고 본다.

2) 예 산

概觀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어차피 學生부담으로 확보될 예산이라면 구차하게 自律的經費에 포함시켜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것이 아니라 따로 項目을 獨立시켜 운영해야 學校圖書館이 平準化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은 勿論 自律的經費도 學生自治活動에 있어서 學校차가 없어져 平準化가 될 것으로 믿는다. 圖書費를 獨立項目으로 할 경우 國民學校는 學生 1人當 月 20원 中學校는 1人當 月 40원, 高等學校는 1人當 月 80원 정도를 制限하며 그 시행방법으로는 高等學校 平準化問題로 公立高等學校 등록금 인상시에 研究 검토하여 실시함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司書敎師

圖書館法대로 施行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만약 그대로 施行하기 어렵다하더라도 全國 各級 學校에 圖書室이 아닌 圖書館을 설치해야하며 그의 뒷받침으로 예산은 勿論 司書敎師도 最少限度 1個校 1人은 배치해야 平準化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司書敎師의 進路(1級주임, 교감)가 막혀있어 유능한 司書敎師의 圖書館 이탈로 學校圖書館이 침체 罷가는 것도 차체에 철저하게 시정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汎國民의 敎養을 위한

大 韓 國 史 全12卷

李 瑄 根 著

帙當定價 32,000원

普及特價 30,000원

6個月 月賦 販賣

發行·新 太 陽 社

서울 鍾路區 積善洞 132-3

電話·(74) 4435·9746

(73) 9732

振替口座·서울 779番